

개방에 급급한 나머지 사회정책적인 면 포기할 수 없어



金永坤
〈한국경제논설위원〉

보험시장을 전면 개방하기 위해서는 이에 앞서 충분한 논의와 함께 치밀한 사전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무릇 한 국민경제가 대외적으로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에 있어서인지 충분한 자기실력이 축적되어 있어야 한다. 적어도 외국자본의 시장지배를 막을 수 있는 국내자본의 축적이 필요하며 이러한 여건에서는 경제의 한단계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방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스스로의 내부적 요인보다도 외부의 요구에 의해서 개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 서둘러 사전 준비를 함은 물론 이러한 준비를 위해서 최소한 개방을 늦추는 것이 불가피하다. 국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는 절대로 소홀히 될 수 없는 사

항이다.

특히 보험산업은 금융산업의 하나로서 전체산업에 대한 과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어떤 특정 제조업 분야의 개방과는 비중이 전혀 다르다. 그만큼 보험의 개방 문제는 더욱 신중을 요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흔히 보험산업의 개방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손해보험시장에 외국의 2개회사가 진출해 있는 점을 들어 이미 개방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이를 확대하고 아울러 외국 손보사에 제한하고 있는 특수 건물의 화보 및 자보분야도 제약을 풀고 더 나아가 생명보험시장도 개방하자는 것이니 개방의 충격이 다른 산업보다 비교적 적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 모양이다.

따라서 보험산업의 개방문제에 있어서는 첫째로 2개 외국회사의 영업비율을 살펴 더 이상의 개방에 따른 전망과 둘째 특수 보험

도 개방해야 하는가의 타당성 셋째 생보시장의 여건등을 단계적으로 고찰해야 할 것이다.

첫째 우리나라에 진출한 미국 2개사의 84년도 영업 실적은 전체 손보사의 1.2%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비중은 얼핏 작은 것으로 보일수 있으나 같은해 일본의 경우 외국 보험사 39개사의 영업비중이 1.4~1.8% 수준이었다는 점을 비교해 볼 때 결코 그 비중이 작다고는 평가 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손보사의 영업이 특수 화보나 자보를 하지 못하는 가운데 가계성 보험을 중심으로 영위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외국 손보사의 영업비중은 상대적으로 크게 높아진다.

이와같은 간단한 지표에서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현재의 여건에서만도 우리 손보사들의 영업은 점차 위축되고 있다. 특히 우리 손보사들의 활동이 부진한 가계성 보험분야에서 외국 손보사들의 영업활동이 활발한 것은 충격적인 것으로 받아 들여져야 할 것이다.

손해보험분야에서 항상 앞으로 개척해 나가야 할 필수적인 분야가 가계보험분야라는 것을 인식,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서 외국사의 비중이 점증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결국 우리 손해보험회사들은 재무구조의 악화등에 결과한 근본적인 기업 수지면에서의 취약점이 있는데다가 보험모집에 있어서도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전근대식 경영으로 일관해 오고 있어 허약한 체질 속에 안주해 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만일 손보시장을 전면 개방할 경우 국내 손보사의 영업위축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둘째, 특수 보험의 문제이다. 특히 4층 이상의 건물에 적용하는 보험료의 환생세도를 폐지하고 이 분야도 전면 개방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문제이다.

단순히 자율경쟁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전체 보험산업의 개방이라는 견지에서는 일응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화보 풀은 단순히 과당경쟁을 억제하자라는 보험실서상의 문제 뿐만이 아니고 이러한 차원을 넘어 사회정책적 목표가 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다.

즉 화보풀은 여기에서 나오는 일부 수익으로 방재사

업을 하기 위한 것이다. 방재는 두말할 것도 없이 사회 후생과 복지증진의 간접적 효과가 있는 사회정책적사업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단순한 손보시장의 개방이라는 목표에만 급급, 그 이상의 사회 정책을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손보시장의 개방과는 별도로 다각적인 정책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셋째, 생보분야의 개방은 본란에서 취급될 성질이 아니나 이는 손보의 개방 이후에 단계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만 지적해둔다.

보험산업의 개방에 따른 득은 어떤것이 있는가.

흔히 보험산업을 개방해야 한다는 이유로서 발달된 선진기법을 도입해서 우리 손보사의 합리적 경영을 유도하고 아울러 자유스러운 경쟁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이라고 내세운다.

그러나 금융의 선진기법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향상적인 것이며 구실을 위한 구실일 뿐 이는 실질적으로 큰 성과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이미 2개의 외국 손보사가 국내 진출시 나온 것이나 그동안 국내 손보사의 선진기법도입은 별로 없다.

이와 똑같이 은행산업에서 외국은행의 국내진출시에도 이러한 이유가 내세워졌으나 역시 별로 도움이 된 것은 없다.

서비스 산업에서의 노하우는 제조업의 그것과 분명히 다르다. 이는 즉각 도입해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입, 활용될 수 있는 환경과 능력이 문제가 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금융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산업의 특성상 고유한 문화풍토에 의해 의존되는 것이며 그러한 풍토에서 스스로 경쟁적 자세로 개발 될 수 있는 것이다.

국제경쟁력 강화도 역시 스스로의 경쟁적 풍토에서 조성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대외개방에 따른 득이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도입보다는 개발해야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대외개방이 불가피할 경우 그 이전에 먼저 스스로 경쟁을 통한 체질개선의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